

## **소송을 넘어,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**

### **- 법무부 ·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-**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4월 2일(목) 오전 대한상사중재원(원장 신현운)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(ADR)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
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. 1.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-C 사업을 중재를 통해 약 100여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하여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,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.”라고 하면서, “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,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말하였습니다.

신현운 대한상사중재원장은 “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,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☐

- 【첨 부】 1. 「중재」 제도 설명 자료
2. 사진. 끝.

|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법무부<br>상사법무과 | 책임자 | 과장 | 최성수 (02-2110-3167) |
|       |              | 담당자 | 검사 | 권영우 (02-2110-4458) |



## □ 「중재」 제도 개관

- (의의)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
- (주요 특징) ▲ 중재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 ▲ 중재 판정은 종국적 구속력 있음 ▲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, 당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 부여도 가능
- 법무부는 「중재법」 및 「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소관하고, 대한상사중재원을 일반적으로 감독

## □ GTX-C 공사비 분쟁 중재 해결 사례

### ○ 개요

- '24. 1. 양주-수원을 잇는 GTX-C(수도권광역급행철도) 노선 착공식 후, 시행사(현대건설 컨소시엄)의 공사비 인상 요청 등 문제로 착공 지연
-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합의하고, '25. 12.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및 '26. 4. 1. 중재 판정

### ○ 진행 경과

- '25. 12.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판정부 구성
- '26. 1~3. 심리 기일 진행 및 심리 종결
- '26. 4. 1. 중재 판정 (중재합의서 제출일 기준 약 100일 만에 신속한 판정 및 분쟁 해결)

